「학업성적 평가 내규」 개정문

개정 2026. 5. 18. · 시행 2026. 6. 1.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업성적 평가 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A 이상: 30% 이하 B≣ B+: 0≣ 70% C+ 이하: 30% 이상
1.
2.
3.
4. 성적 분포 비율은 [별표1]과 같이 한다.
[별표1] 성적평가 비율표
평가방식
평가비율
합계
과목 범위
A
B
C
D
F
상대평가
0~30%
0~70%
30~100%
100%
일반과목, 이론이 포함된 실험/실습/실기과목,
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내국인학생에게 적용)
별도상대평가
0~50%
50~100%
100%
실험/실습/실기/설계 과목 (100%)
단체실습과목
*(연극, 합창(주) 등)
개별지도 과목
*(졸업논문, 졸업작품, 전공실기, 전문실기, 집중수업,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)
외부위탁(특별프로그램)의 실험실습과목
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
교직과목
핵심교양 II 수업
SU-AL교수법 전공수업
*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
서비스러닝 전공 수업
*글로컬사회혁신원 수업 이수 시 적용

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
*100% 외국인 과목
기초교양
*(사고와 표현, 글로컬 영어-일반반)
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
*약학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
절대평가
0~100%
100%
캡스톤디자인 수업
*인정과목에 해당
기초교양
*글로컬 영어-고급반
핵심교양 수업 I
*인성과 사회, 종교와 인생, 생활과 윤리, 역사와 문화
SU-MVP교수법 2.0에 의한 수업
·MVP혁신교수법
·SU-BFFL교수법
·SU-HyFlex교수법
·SU-Colab교수법
영어·일본어·중국어 원어 수업 (학과 인정 전공과목)
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
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
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외국인학생에게 적용)
Pass or Fail
100%
학과 지정 과목
*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
*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함(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)
*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%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 지침 제 10조 6항) 단, 영어영문학과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

부　　칙

이 내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